

(참 조)

#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95-45 |
|----------|-------|

제출년월일 : 95. 10.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사 회 과)

## 1. 제안이유

-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일치되게 개정하여
- 달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 2. 근거법령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 3. 주요골자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

원"으로 변경(안 제4조등)

○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의료보험법"을 "의료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제5조·제6조제1항 및 제3항·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조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u>의료보험법</u>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br>..... <u>의료보호법</u> .....<br>.....<br>.....  |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u>의료보호법</u>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br>② (생략)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i <u>의료보호법</u>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u>사회복지계장</u> 으로 한다.<br>2 (현행과 같음)     |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u>기금출납명령관</u> 에게 지출원과 출납원과 관한 규정은 <u>기금출납공무원</u> 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br>..... <u>기금</u> .....<br>..... <u>운용관</u> .....<br>..... <u>기금출납원</u> .....<br>..... |
| 제6조(수입) ① <u>기금출납명령관</u> 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br>② (생략)<br>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u>기금출납명령관</u> 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 1. <u>기금운용관</u> .....<br>.....<br>.....<br>② (현행과 같음)<br>③ .....<br>..... <u>기금운용관</u> .....<br>.....   |

